

# 개정 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과제★

안황권\*

## 요 약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3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호를 비롯하여 전체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경비업법의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신입교육의 시기, 신입교육과목의 문제, 직무교육의 문제, 경비업자 부담의 교육문제, 전공대학생의 신입교육이수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하여 시험과목의 문제, 선발방식과 교육의 문제, 교육과목과 시간 배정의 문제, 보수교육의 신설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령의 오류, 미비, 불합리한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The Problem and the Proposal in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hn Hwang Kwon\*

### ABSTRACT

Korea Privative security regulation was enacted in 1976 and which was revised 18 times. But most of the revision was made by outer forces but not by for the law itself. Now more than 39 years since the law was enacted and 63 years modern private security method was adopted. In this point of time being requires well equipp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would be revised to match with much changed society.

Firs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ways of education, written examination. Second, security guard supervisor or examination subject should be revised, which means overlapped subjects must be eliminated. Third, collective civil petition place has to be arranged.

**Key words** : Private Security Regulation, Private Security Industry, Administrative Supervision, Revision, Modern Private Security

---

접수일(2014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2014년 10월 13일)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 본 연구는 경기대학교 2014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1. 서 론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3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다. 60년 넘는 세월동안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경비업법의 제정이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규제위주의 법률이었다. 치안주체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치안정책의 변화 속에서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이후 공공성과 수익성을 각각 요청받았지만 크게는 공공성을 기조로 하여 수익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2년 7월 27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주)SJM에서 노조원과 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 간 폭력사태로 인해 경비업자(법인)를 대폭 규제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다수 19대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의 합의로 개정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번 사건뿐 아니라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2011년 유성기업 사태 등 그동안 여러 곳에서 발생한 ‘용역폭력’을 차체에 봉쇄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 탈법 경비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건전한 업체는 본지대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생활안전산업 육성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그동안 경비업법이 18차례 개정되었지만 대부분 타법령의 변경에 따른 연쇄적인 개정이거나 당시의 상황변화에 따른 땀질식 개정에 그쳤다.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육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비업이 생활안전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제 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되었고, 현대적 의미의 경비산업이 들어온 지 63년이 되었기에 이에 걸맞은 경비업법으로 개정할 때가 되었다. 우선 변화하고 있는 시큐리티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제호부터 보안산업진흥 또는 보안산업육성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 필요하며, 내용도 민간조사, 시큐리티컨설팅, 시큐리티 플래닝 등의 새로 확장된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경비업법령의 내용을 평가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경비업의 등장과 경찰의 규제

안전이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국가보호 이전에 자기보호와 부락 공동보호가 우선되었다. 이와 같이 통일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왔지만 국가가 성립된 후에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국가 시스템 특히 경찰제도를 통하여 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행정국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문제도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하는 사고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또 안전문제를 담당해온 경찰인력과 장비를 계속 확대할 수 없는 예산의 한계, 경찰의 능력에 대한 한계, 수익자 부담원칙, 이익집단이론, 치안공동생산, 거버넌스 등의 확대에 따라 국민의 안전문제도 국가 특히 경찰의 ‘경비업무’만이 아니라 ‘경비업’으로 다원화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된 것도 공동치안생산의 계기가 된 것이다. 개인 누구라도 안전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이 파괴되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회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공동자산으로 점차 인식하게 된 것이다. 안전을 무시하면 단기적으로 곧 그 개인은 이익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개인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안전 전문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기능의 분업화와 전문화는 ‘직업적’으로 안전을 제공하는 자의 출현을 가져왔고, 그것이 ‘공무원’으로서의 경찰에 머물지 않고 민간차원에서의 민간경비 ‘산업’으로 확대되어 온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1].

경비업은 좁은 의미에서 고객이 의뢰한 경비대상시설의 재산이나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체의 경비업무가 적절하게 수행

되어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뿐 아니라 공경비에 대한 보완적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자주적인 방법, 방재활동의 강화로 생활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재산에 대한 침해를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의 성격상 자칫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특히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상 노사분규현장이나 다툼 등의 문제가 있는 장소 등에서 부적절한 경비업무를 실시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 국민생활에 커다란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2].

경비업무가 부적절하게 실시되기 쉬운 요인을 제거하고 경비업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여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비업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규제를 정해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2 경비업법의 제·개정과 정책변화

196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는데 범죄문제도 그중에 하나이다.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온 반면 가치관이 다양화와 향락적 풍조로 인하여 범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3].

이에 따라 치안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고려하는 치안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치안서비스 주체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정책의 변화와 함께 관련법령이 없는 가운데 이미 경비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자들이 청원을 하여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것이다[4].

경비업법의 목적은 제정 당시부터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규제위주의 법

률이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공성 성향 또는 기업성 성향을 반영하여 개정되어 왔으나 크게는 공공성의 기초 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하는 흐름을 유지해 왔다.

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제17차 개정도 집단민원현장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업체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불법, 탈법 업체들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의의 건전한 업체들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비업법의 개정이 주로 타 법령의 개정때 따른 연쇄적 개정이거나 그 당시 상황에 따른 땀질식 개정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생활안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비산업에 걸맞은 경비업법을 가질 때도 되었다.

## 3. 경비업법령에 대한 평가

경비업법은 그동안 18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경비업법령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①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문제 ② 경비지도사의 문제 ③ 집단민원현장 규정의 문제 ④ 법령의 미비, 모호 및 오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3.1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문제

#### 1)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대한 규정

경비원의 교육에 관해서는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1항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雇傭人)을 경비원이라고 하며 통칭 경비원이라고 하면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항이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면 1항은 일반경비원 대상의 교육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직무교육에 시간과 과목의 문제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4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안전행정부령에서 정하는 시간(6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그러나 분산배치되거나 교대근무형태가 다양한 경비원의 특성상 직무교육을 매월 4시간 또는 6시간 이상 받도록 하는 것은 실제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서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동영상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고령의 경비원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동영상 강의를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 3) 신입교육의 실시 시기의 문제

경비원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특수경비원신입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특수경비원의 사전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교육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4년 6월7일 개정된 동법 제18조제7항에

서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입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사전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경비업법의 제18조는 제1항에 경비원의 명부 작성·비치, 제2항에 배치, 배치폐지시 신고, 제3항에 배치 미신고시 배치폐지 명령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2014년 6월7일 개정에서 대폭 수정되어 주로 집단민원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신입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사전교육을 강제하는 것이 전체적인 입법의 흐름에 맞지만, 문제가 없는 시설경비업무 등에는 종전처럼 일정한 기간 내에 사후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문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이론교육 4시간, 실무교육 19시간, 기타 1시간으로 총 24시간이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소정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제1항). 그러나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①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제2항).

따라서 일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또는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대상이 된다.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경비업무를 특정해야 할 만큼 경비업무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비업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업무성격과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걸맞은

각각의 세분화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은 이러한 각각의 고유한 업무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네 가지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모두 동일한 24시간의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표 1>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 (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 (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을 포함한다)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3
	체포·호신술 (질문·검색요령을 포함한다)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 (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3
기타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계		24

5)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과 시간의 문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과 시간은 이론교육 15시간, 실무교육 69시간, 기타 4시간을 총 88시간이다.

이중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시간,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 4시간, 정신교육 2시간, 폭발물 처리요령 6시간, 민방공(화생방 관련사항을 포함) 6시간 등의 과목과 시간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우선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실제 특수경비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

별하면 시설경비업무의 일종이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와 관련된 과목이 대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헌법 및 사법을 교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체포 등으로 한정해야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 2>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69시간)	정신교육	2	
	테러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예절교육	2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 한다)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 한다)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타	입교식·평가·수료식	4
	계		88

6) 경비업자의 부담 교육의 문제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소정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제1항).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신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19조제1항).

이러한 규정은 자비로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고 있으며, 사전교육 이수제로 인한 탄력적인 인력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경비원이 취업하기 위한 사전 조건이 되는 신입교육의 경우 일반경비원은 24시간,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이에 비해 대학의 시큐리티 관련학과에서 관련과목을 6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전공자들이 일반 또는 특수경비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신입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2 경비지도사의 문제

#### 1) 경비지도사 선발 시험과목의 문제

경비지도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44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지도사 선발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은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일반경비지도사의 1차 시험과목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이며 2차 시험과목은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과 선택과목(소방학·범죄학·경호학 중 1과목)이며, 기계경비지도사의 1차 시험과목은 일반경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이며 2차 시험과목은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과 선택 1과목(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계획 중 1과목)이다.

40문제가 출제되는 법학개론 과목의 경우 출제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법학의 전반적인 상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법률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5].

2차과목인 경비업법에 ‘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라

고 되어 있는데 경비지도사는 청원경찰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일반경비지도사 2차과목 중 선택과목도 문제가 있다. 즉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와 관련이 많은 과목을 나열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3>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계획 또는 기계경비설계 중 1과목

자료: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시행령 제12조제3항관련)

#### 2) 필기시험 중심의 선발 방식 및 교육의 문제점

경비지도사의 직무가 경비업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경비지도사가 소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 암기를 잘하여 경비지도사로 선발되면 실제 현장에 배치되어 적절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다[5].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비지도사의 직무중 ②③④는 현장실기지도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경비지도사의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표 4> 경비지도사의 직무

구 분	직무 내용
일반 경비지도사	①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월1회 이상 수행 ②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주1회 이상 수행 ③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기계 경비지도사	위의 ①②③과 동일 ④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주1회 이상 수행 ⑤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주1회 이상 수행

자료: 경비업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

3) 경비지도사 교육 과목과 시간 배정의 문제점

경비지도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44시간 교육을 받은 자에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동법 제11조제2항). 경비지도사의 교육은 공통과목 28시간, 자격종류별 교육 16시간으로 총4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며(시행규칙 제9조제2항), 경찰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과목 중에는 이미 필기시험 준비를 위해서 학습된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민간경비각론(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운용관리, 기계경비기획및설계, 인력경비개론)등이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이를 재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상당히 학습된 과목을 재수강하는 것은 교육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비지도사 시험 검정이 암기를 통한 필기시험 위주였다면, 교육은 경비업무별 실기위주와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리더십, 위기관리론 등의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계경비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및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계			44

4)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의 신설

시큐리티 환경이 급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빈번하게 경비법령이 개정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령에는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지도사가 스스로 개정된 법령을 공부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해야 하지만, 매일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그러한 노력은 쉽지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법령에 명시하여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하고 교수하여야 할 것이다.

3.3 집단민원현장 규정의 문제

기존 경비업법에서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데 2013년 6월4일 개정 경비업법에서는 이를 집단민원현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즉, 경비업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집단민원현장'이란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②「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③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④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⑤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⑥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⑦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여 특히 '예

<표 5>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시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 경비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상되는 사업장'이란 다소 판단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4호의 '특정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의적인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이었던 것을 명확하게 개정한 것이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의 규정 중 바목의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주로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다른 조항과 비교할 때 무리하게 포함된 내용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사를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부적합한 일이다.

### 3.4 법령의 미비, 모호 및 오류

#### 1) 경비원의 복장 규정의 모호

동법 제16조제2항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①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①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는 것, ②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는 것, ③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④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취지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에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부분 본문"의 모호

동법 제18조제8항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섯 개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 "5. 경비업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서 '부분 본문'이 지칭하는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분명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 3) 위임규정의 결여

법 제8조에서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응체제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이 시행령 제7조에서는 "(생략).....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정보를 수신한 때에는 정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8조에 "(생략).....이를 위한 대응체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시행령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경비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1회 위반-100만원, 2회 위반-200만원, 3회 위반-4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50만원, 2차 위반-100만원, 3차 위반-200만원이다.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비치하는 것보다는 선행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보다는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5) 허가신청서 제출처의 문제

경비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생략)...변경허가신청서에 ...(생략)...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의 경우에 관할 지역관청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상급관청에 상신한 후 재가를 얻어 다시 관할 지역관청을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있다. 허가신청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관할(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한 후 내부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이 재가한 후 경찰서장을 통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찰조직의 체계 및 효율적인 업무운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멀리 떨어진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고하기 보다는 가까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행	개정안
시행령 제4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허가신청서에,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허가신청서에, ....변경허가신청서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신고사항의 제출처의 문제

경비업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②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③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④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⑤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이다.

이 규정대로 하자면, 경기도 평택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A경비업체가 휴업을 한 경우에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A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관할 평택경찰서는 A업체가 휴업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나중에 정책, 기획업무를 주로 하는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역으로 자료를 받아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법령상 지방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것을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와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 생략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 생략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경비업법령의 개정방향

### 4.1 교육에 관한 문제

#### 1) 일반경비원 사전 신입교육의 문제

모든 경비업무에 경비업자는 신입교육을 이수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집단민원현장의 경우에는 신입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100분의 21 이

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집단민원현장 등 다툼이 있는 문제의 경비대상시설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이한 경비대상시설에는 종전처럼 채용, 배치후 2개월이내 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경비업무 특성과 경비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이다. 신입교육이 사전이수제도로 변경된 후에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인력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가 많지 않은 광주,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수요가 많지 않아 교육기회가 불규칙하여 필요한 제때에 경비원을 교육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2)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문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교과목은 경비업무의 구분 없이 획일적인 교육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비업자가 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각 경비업무의 특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입교육에서는 다섯 가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할 경비원에게 각 경비업무의 고유한 교육을 시키지 않고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가지의 경비업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업무성격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각각의 세분화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경비업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경우 30시간 중에서 15시간은 공통과목, 15시간은 각 업무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경비업자만의 교육비 부담의 문제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소정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특수경비원도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소정의 교육기관에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비로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이수를 한 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 또 현행 사전교육이수제에 따른 인력공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비부담의 사전교육을 실시

한 후, 교육비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경비원의 직무교육 문제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법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이상,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비업무의 특성상 1-2명이 한조가 되어 분산 배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의 경우 경비원의 신입교육 즉 현업교육은 6개월에 8시간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중 3시간은 공통교육을, 5시간은 경비업무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6개월에 1회 6시간을 실시하고 그중 2시간은 경비업법 등 공통내용 2시간, 각 경비업무별 4시간을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 5)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문제

신입교육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다. 특수경비원 신입교육도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하기 전에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입교육과목의 이론교육 중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과목을 8시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중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과 관계가 전혀 없는 과목이다. 직접 관련된 이론과 실무과목이

시간부족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관련이 없는 과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지만 그 속성은 주로 시설경비업무의 내용과 같다. 따라서 중요한 시설경비업무에 필요한 ‘순찰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6) 경비업자의 부담 교육의 문제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소정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제1항).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신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19조제1항).

이러한 규정은 자비로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고 있으며, 사전교육 이수제로 인한 탄력적인 인력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경비원이 취업하기 위한 사전 조건이 되는 신입교육의 경우 일반경비원은 24시간,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이에 비해 대학의 시큐리티 관련학과에서 관련과목을 6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전공자들이 일반 또는 특수경비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신입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경비업자 부담의 교육문제와 전공자의 신입교육 면제

경비업자의 부담으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자비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초 채용후 이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6].

현재 신입교육은 일반경비원이 24시간, 특수경비원이 88시간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의 시큐리티 관련학과에서 6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전공자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면제해야 할 것이다.

4.2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의 문제점

1) 경비지도사 선발 시험과목의 문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이므로 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과목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1차 시험과목인 법학개론 과목은 출제기준이 법학개론 5개 세부항목, 헌법 3개 세부항목, 민사법 3개 세부항목, 형사법 2개 세부항목, 상법 일반 2개 세부항목, 사회법 일반 2개 세부항목, 행정

법 일반 2개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민간경비와 관련이 많지 않은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험과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 감독, 교육하는 자이므로 청원경찰하고는 직접 관련이 전혀 없는데도 ‘경비업법’ 과목에 청원경찰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일반경비지도사 2차과목 중 하나는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에서 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부적합하다. 경비지도사는 화재예방과 대처, 범죄예방, 신변보호 등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안전학 등을 개설하여 검정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경비지도사의 경우 1차시험은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2차는 시설경비론, 호송경비론, 신변보호론으로 또는 2차는 안전학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1차시험은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2차는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필기시험 중심의 선발 방식 및 교육의 문제점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①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②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③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④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⑤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⑥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다. 현행 경비지도사는 지나치게 이론 과목을 필기시험만으로 평가한 후 합격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내용을 검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경비지도사 교육 과목과 시간 배정의 문제점

경찰청장은 시험에 합격하고 44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교육과목 중에는 이미 필기시험을 통해 학습한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민간경비 각론(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운용관리, 기계경비기획및설계, 인력경비개론)등이 개설되어 수강생

들에게 흥미가 떨어져 교육효과가 낮다. 경비지도사 선발 시험이 이론에 치우친 과목이었으므로 기본교육은 다섯 가지의 경비업무별 실무내용의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 4)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의 신설

시큐리티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관련 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으므로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3-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근무연한과 보수교육이수를 기준으로 경비지도사를 1급-3급으로 등급화할 수 있을 것이다.

### 4.3 집단민원현장 규정의 불합리

경비업법 제2조제5호에 집단민원현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사분규현장 또는 민원이나 다툼이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분명하게 명시한 개정이었다. 그러나 주로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장소가 대부분인 반면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양한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을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부적합한 일이다.

### 4.4 법령의 미비, 모호 및 오류

#### 1) 경비원의 복장 규정의 모호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 중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적용되는 범위가 모호하다. ①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①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는 것, ②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는 것, ③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④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취지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에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부분 본문”의 모호

“부분 본문”의 적용범위가 모호한 것은 개정되어야 한다. 동법 제18조제8항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섯 개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 “5. 경비업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서 ‘부분 본문’이 지칭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더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위임규정의 결여

법률과 명령 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우는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8조에서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이 대응체제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이 시행령 제7조에서는 “(생략).....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고”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8조에 “(생략).....이를 위한 대응체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 4) 시행령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의 내용

경비원 명부는 작성되어야 비치될 수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더 불성실하므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부과되어 있다. 즉 작성되지도 않은 명부는 비치도 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1회 위반-100만원, 2회 위반-200만원, 3회 위반-4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50만원, 2차 위반-100만원, 3차 위반-200만원이다.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비치하는 것보다는 진행되는 일이므로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5) 허가신청서 제출처의 문제

허가신청서를 비롯한 민원서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후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면 된다. 그러나 경비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생략)...변경허가신청서에 ...(생략)...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조직의 체계 및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멀리 떨어진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고하기 보다는 가까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개정안
시행령 제4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허가신청서에,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허가신청서에, ....변경허가신청서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신고사항의 제출처의 문제

경비업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소정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7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에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법령상 지방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것을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5].

그리고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와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

나 종료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경비업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2013년 6월 7일 대폭적인 개정을 하였지만 이번 개정 또한 집단민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18차례 개정을 하면서 경비업법의 목적대로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는 않았다. 주로 대증요법적인 개정이거나 타법개정에 따른 연쇄적인 개정, 환경변화에 따라 땀질식 개정에 불과하였다.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3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호를 비롯하여 전체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경비업법의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신입교육의 시기, 신입교육과목의 문제, 직무교육의 문제, 경비업자 부담의 교육문제, 전공대학생의 신입교육이수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하여 시험과목의 문제, 선발방식과 교육의 문제, 교육과목과 시간배정의 문제, 보수교육의 신설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령의 오류, 미비, 불합리한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비업이 이제 생활안전산업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안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므로 발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이상훈,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0회 정기 세미나 자료집, p.111, 2014.
- [2] 안황권,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진영사, 2014.
- [3] 안황권, “1970년대의 민간경비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3(2): 15-24, 2013.
- [4] 김정환, 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 I )」, 백산출판사, 2003.
- [5] 안황권,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4(2), pp.201-224, 2010.
- [6] 안황권,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 pp.101-124, 2009.

---

## [저자소개]

---



**안 황 권 (Ahn, Hwang Kwon)**

1981년 경기대학교 법정대학(행정학사)  
1989년 경기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현재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e-mail : ahk@kgu.ac.kr